

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24
제정일자	2011.05.02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11.05.02.제정 2014.02.01.개정 2020.04.21.개정 2020.06.19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1.01.28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산학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.)의 직무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용어 정의)** 이 규정에서 명하는 "장애학생"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고, 본교에 학적을 둔 학생을 의미한다.
- 제3조(직무)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한 모든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한다.
- 제4조(담당업무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- 2. 장애학생 편의 제공을 위한 도우미 자원봉사자 운용에 관한 사항
 - 3. 장애학생의 학사, 진로, 생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
- **제5조(조직)** ①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전담직원 등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센터장은 장애학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 <개정 2020.09.25., 2021.01.28.>
- **제6조(직원등)** ① 지원센터의 행정은 장애학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한다. <개정 2020.09.25., 2021.01.28.>
 - ② 지원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- 제7조(위원회) 장애학생 대학생활지원에 관한 정책과 방침 등 주요사항들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,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. <개정 2020.09.25., 2021.01.28.>



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24
제정일자	2011.05.02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-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01.28.> 제9조(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 - 1. 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
 - 2.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
 - 3. 장애학생 편의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
 - 4.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<신설 2020.06.19.>
- 제10조(평가, 개선 및 환류)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의 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 환류를 실행한다. <신설 2020.06.19.>
 - ①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설, 운영 관련 수요도·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 - ② 부서 주관 사업 실행 성과와 부서 및 대학 자체 수요도 ·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,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.
 - ③ 주관부서는 운영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한 <성과 분석 및 환류 계획 보고서>를 작성하여 교육품질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.
 - ④ 교육품질개선위원회, 기획위원회의 심의에 기반하여 권고된 추가 개선안을 반영하여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.
 - ⑤ 환류 계획을 대학 홈페이지 환류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유한다. 필요시 주관부서는 교직원 연수 및 성과공유회 등의 개최,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환류보고서 등의 작성을 통하여 성과분석 및 개선안, 개선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다.
 - ⑥ 운영위원회는 개선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, 추가 개선안을 제시한다.
- 제11조(보칙)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원센터 내부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4.21.)에 의하여 『산학처』를 『산학취업 처』로 『입시홍보실』을 『입학홍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



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24
제정일자	2011.05.02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,『산학취업처』를 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